

# 참가신청 계약서

InterBattery 2017  
2017년 9월 27(수) ~ 29일(금)

## 1 신청/계약자

업체명	국문	영문
사업자등록번호		대표자
우편물 수령 주소		
담당자명		부서 및 직위
전화	사무실	휴대전화
E-mail		팩스
주요출품품목	국문	영문

\* 상기 사항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InterBattery 2017 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2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자 정보 (상등 ■)

수령인		부서 및 직위
전화	사무실	휴대전화
		E-mail

\* 상기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3 참가신청/계약내역

참가구분	부스구분(a)	부스단가(b)	참가비(a*b)	부가가치세	합 계
조기신청 (~2017. 5. 31)	회원사	독립 부스	1,800,000		
		조립 부스	2,200,000		
		프리미엄 부스	2,700,000		
	비회원사	독립 부스	1,980,000		
		조립 부스	2,420,000		
		프리미엄 부스	2,920,000		
일반신청 (2017. 6. 1 ~ 7. 31)	회원사	독립 부스	2,000,000		
		조립 부스	2,400,000		
		프리미엄 부스	2,900,000		
	비회원사	독립 부스	2,200,000		
		조립 부스	2,600,000		
		프리미엄 부스	3,100,000		

\* 조기참가신청은 2017년 5월 31일 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제공됩니다.

독립부스: 전시면적만 제공 / 조립부스: 전시면적 + 기본조립부스 / 프리미엄부스: 전시면적+고급사양 조립부스 제공

계약금 납부: 부스비 총액(부가세 포함)의 50%,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로부터 1주일 이내 납부

※ 1부스: 3m×3m=9㎡(약 2.7평), 부스 최대 높이: 5m / 독립부스 최소 신청 단위: 2부스 이상

## 참가비납입처: 신한은행 140-000-113217 / 예금주 (주)코엑스

뒷면의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상기의 내역으로 InterBattery 2017사무국으로 참가신청을 합니다.

2017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3

신청인

(인)

(주)코엑스 대표이사



대표자

(인)

[본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전시자(참가업체)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.]

\* | 첨부 |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
#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

## 제1조 용어의 정의

전시자(참가업체)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 “전시회”라 함은 “InterBattery 2017”을 말한다. “주최자”라 함은 “한국전지산업협회(KBIA)”, “(주)코엑스(Coex)”, “InterBattery 2017 사무국”을 말한다. “GSC(General Service Contractor)”라 함은 주최자와 업무분장을 통해 전시회 Management 전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전시회에서는 “(주)코엑스(Coex)”가 담당한다.

## 제2조 전시스페이스 할당

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, 참가규모, 전년도 참가실적, 전문관 구성, 전시품 성질 등 기타 기준에 의해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GSC를 통해 배정한다. 주최자(혹은 GSC)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스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제3조 계약,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

참가신청(계약)서는 InterBattery 2017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 후 7일 이내에 50%를 납입하고, 잔액(부대시설 신청비용 포함)은 2017년 7월 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. 이때 참가비 납부는 InterBattery 2017 사무국으로 통합하여 납부한다. 참가비 내에는 전시장소, 24시간 경비, 통로청소, 홍보자료 제공, 전시 디렉토리 및 전시회 개최 시까지의 각종 정보제공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.

## 제4조 설치 및 철거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(혹은 GSC)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(혹은 GSC)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## 제5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
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. 주최자(혹은 GSC)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(혹은 GSC)는 필요 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.

## 제6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

전시자는 주최자(혹은 GSC)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 제7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

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하며,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스페이스 이내(以內)이어야 한다. 또한,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,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(참가업체)에게 있다. 주최자(혹은 GSC)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, 지나친 소음 등 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## 제8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

전시자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## 제9조 현장판매 금지

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참가객에게 실연하는 데 있으므로, 전시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. 단, 주최자(혹은 GSC)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## 제10조 참가신청 해지

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최자(혹은 GSC)는 일반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.

## 제11조 규모축소 및 위약금

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부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
- A. 2017. 5. 31. 까지 : 취소면적/신청면적 ×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× 50%
- B. 2017. 6. 1. 부터 7. 31. 까지 : 취소면적/신청면적 ×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× 80%
- C. 2017. 8. 1. 이후 : 취소면적/신청면적 ×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× 100%

## 제12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

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(취소)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포기(취소)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
- A. 2017. 5. 31. 까지 :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의 50% 납부
- B. 2017. 6. 1. 부터 7. 31. 까지 :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의 80% 납부
- C. 2017. 8. 1. 이후 :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의 100% 납부

## 제13조 전시회 변경

주최자(혹은 GSC)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

- 1)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 
전시자는 코엑스(Coex)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.
- 3)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에 따른다.

## 제15조 분쟁해결

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(혹은 GSC)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,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## 제16조 청렴계약 이행

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/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